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계열 자료의 분석, 1970-2002*

정 기 원**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핵심단어: 이혼율, 사회경제적 상황, 성비, 이혼법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도움의 말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I. 서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0년 이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이혼은 모두 167,096건으로(통계청, 2004a), 2002년의 145,324건에 비해 1년 동안에 21,772건이 늘어난 것이며, 1993년의 59,313건과 비교하면 10년 동안에 2.8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건수로 측정되는 조이혼율의 경우 1970년에는 0.4건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급격하게 늘어나 2003년에는 3.5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계청(2004a)은 2003년 이혼의 주된 사유 중에서 부부불화¹⁾가 전체의 70.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이 1992년에는 86.3퍼센트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15.8퍼센트 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에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2년의 이혼 중에서 1.9퍼센트에 지나지 않던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의 비율이 2003년에는 16.4퍼센트로 늘어났다. 이처럼 이혼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혼의 사유도 변하고 있다. Rogers and Amato(1997)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에 대한 관대한 태도의 일반화, 파탄주의 이혼의 도입,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증가 등에 따라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 증가도 우리 사회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중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03). 이러한 탓에 특히 20대의 젊은층과 30대 후반의 중년층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혼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성현·최민자·이진석, 2000).

사회현상으로서의 이혼은 미시적으로는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의 긴장 정도를 나타내고, 거시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결혼제도의 기본 구조가 지니는 부적정성 및 결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eyman and Slep, 2001), 그 자녀들의 정신적 및 물질적 고통에도 영향을 미친다(Reifman, Villa, Amans, Rethinam and Telesca, 2001). Amato, Johnson, Booth and Rogers (2003: 1)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동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혼외 출산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초혼 연령이

1) 부부불화는 배우자 부정, 정신적 및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그리고 성격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된다(통계청, 2004a).

높아지고, 그리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혼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 등은 결혼제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White(1990)는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단위 또는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거시구조적 결정요인,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는 결정요인 등이다. 이혼에 대한 거시구조적 접근은 주로 한 사회의 이혼율에 초점을 두는데, 같은 시기의 여러 사회들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경우(Barber, 2003; Fine and Fine, 1994; Trent and South, 1989)와 한 사회의 이혼율 변화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Heaton, Cammack and Young, 2001; Hou and Omwanda, 1997; South, 1985; White and Rogers, 2000)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혼율 급증 결정 요인에 대한 거시적 접근의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태영(1987)과 변화순(1987)이 재판 이혼의 사례를 대상으로 거시적 접근을 하고 있으나, 표본의 편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부영·이소희(2003)는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연구에서 거시적 요인으로 사회적 자원 특성 변인을 분석모형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분석 단위와 함께 분석 수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광배희(2001)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과 사회 및 문화 전반에 걸친 양성 평등 이념의 확산이 이혼율 급증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옥·박경규(1993)는 우리나라 이혼율 증가의 원인을 산업화의 영향과 사회·경제·지리적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도 역시 실증적인 검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경혜·강유진·한민아(2003)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혼 사유들과 연결시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한 사회를 분석단위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이다.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혼율을 결정짓는 거시구조 요인 중의 하나로 경제상황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South, 1985; Trent and South, 1989; White, 1990), 주로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반해 경제적 불경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증가 요인은 사회가 지닌 문화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혼율의 변화와 관련해서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는데, 경제발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양성평등 및 자아 실현 등과 같은 서구의 가치관 수용 등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다

(Heaton, Cammack and Young, 2001). 최근에 들어 경제상황과 이혼율간의 관계는 두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두 현상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70년 이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Land and Felson(1976)이 발전시킨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dynamic macro social indicator model)을 분석틀의 바탕으로 삼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회경제상황,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이혼율의 거시적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지만(예를 들어, Barber, 2003; Fine and Fine, 1994; Heaton, Cammack and Young, 2001; Hou and Omwanda, 1997; South, 1985; Trent and South, 1989; White and Rogers, 2000 등),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각 연도별 경제상황에 따라 이혼율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각 연도별 사회상황에 따라 이혼율은 차이가 있는가?

II. 이혼율의 거시적 결정요인

분석 단위 또는 수준에 따라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시구조적 요인, 개인의 특성, 그리고 부부관계 등으로 나누어진다(White, 1990). 사회나 국가를 분석단위로 이혼율을 분석할 경우에 포함되는 거시구조적 결정요인에는 이혼 관련 법제도, 사회경제적 개발 수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 사회통합의 수준, 성비, 그리고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체계 등이 포함된다(South, 1985; Trent and South, 1989; White, 1990). 이혼 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에는 재혼 여부와 전 결혼의 자녀 여부, 부모의 이혼 여부, 배우자와의 혼전 동거 경험 여부, 결혼시의 연령, 혼전 임신 및 출산 여부, 자녀의 존재 여부, 연령 및 결혼 기간, 그리고 인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혼 가능성에 대하여 부부관계 및 가족형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혼 만족도, 이혼 의도,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상호 작용, 사회경제적 지위, 부인의 경제

활동 참여 여부, 그리고 부부간의 성격 및 의견 차이 등이 포함된다.

1. 경제상황과 이혼율

경제상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거는 혼인의 결정요인과 관련한 일반적 가설에서 찾아지게 된다(White and Rogers, 2000). 혼인 결정요인에 관한 가설은 크게 두 가지 - 남성에 초점을 두는 가설과 여성에 초점을 두는 가설(male-based hypothesis and female-based hypothesis) - 로 나누어진다. 남성에 초점을 두는 가설에서는 '높은 소득, 좋은 직장, 그리고 보다 나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White and Rogers, 2000: 1040). 이러한 가설은 경제력을 지닌 남성이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진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가설에서는 남성의 경제적 상황과 이혼 가능성은 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여성에 초점을 두는 가설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전개된다. 하나는 남성 중심의 가설과 같은 논리 배경을 가지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지닌 취업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결혼시장에서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취업 여성의 이혼율이 낮다고 주장한다(Oppenheimer, 1997).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취업여성들은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결혼의 욕구가 낮으며, 이에 따라 취업 여성이 결혼할 가능성은 낮게, 그리고 이혼할 가능성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된다(Cherlin, 1992).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혼 가능성간의 인과 관계에 있어서 그 방향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기도 한다. 첫 번째 접근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줄임으로써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한다(Schoen and Urton, 197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혼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이혼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혼인이 위기에 부딪히면 여성들은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이혼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혼인의 결정요인에 바탕을 둔 설명은 미시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경제상황과 이혼율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접근은 이혼율의 증가나 감소에 영

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거시구조 요인 중의 하나로 경제상황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South, 1985; Trent and South, 1989; White, 1990), 이러한 접근에서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반해 경제적 불경기에는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한다(Glick and Lin, 1986). 그러나 미국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South(1985)는 경제적 호황기의 이혼율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적 호황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이혼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여러 경제 관련 요인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이혼율과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들을 위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면 재정적 지원을 결혼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줄어들게 되며,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이혼의 기회비용을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이혼을 용이하게 한다. 성 역할과 이혼율과의 관계도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이혼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미국 이혼 자료의 시계열 분석(South, 1985)에서와 66개 국가의 이혼율 비교 분석(Trent and South, 1989)에서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 때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호황은 부부간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높은 만족 수준의 부부관계는 이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제 호황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 호황기에 오히려 이혼이 감소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이 설정된다.

연구가설 2: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낮을 것이다.

경제상황과 이혼의 관계에 대한 접근 중에서 가족 스트레스 모형은 경제상황이 가족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여건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Kwon, Rueter, Lee, Koh and Ok(2003)은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에 놓이는 경제 위기 상태에서 우리나라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가족 스트레스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적 압박이 경제 여건에 대한 가족의 대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부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남편과 부인이 겪게 되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혼인 갈등을 야기시켜 결국은 혼인에 대한 불만과 혼인 해체의 이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과 이혼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연구가설 3: 실업률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높을 것이다.

2. 사회여건과 이혼율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개별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공동체인 가족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자유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국가와 사회의 안녕이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이혼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노명숙·김순옥, 2000: 95). 국가의 이혼에 대한 개입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²⁾ 중에서도 어느 시각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율이 영향을 받게 된다. 파탄주의 이혼법의 제정이 이혼에 대한 법적 장애, 경제적 비용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때문에 이혼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Nakonezny, Shull and Rodgers(1995)는 파탄주의 이혼법의 제정에 따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Goode(1993; Heaton, Cammack and Young, 2001에서 재인용)는 산업화와 관련된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의 변화가 안정된 결혼 형태의 붕괴를 가져 오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결혼 안정성 수준에 따라 이혼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산업화 이전에 이혼을 원하는 남성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었으며, 모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관계, 양가 부모의 약속에 의한 조혼의 성행과 이에 따른 이혼의 일반화 등으로 이혼율이 매우 높았다(Heaton, Cammack and

2) 유책주의 이혼법(fault-based divorce law)은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이혼을 제한한다(Nakonezny, Shull and Rodgers, 1995: 477-478). 우리나라의 민법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혹은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족손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이혼 사유가 된다(두리모아, 2003). 파탄주의 이혼법(no-fault divorce law)은 이혼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Nakonezny, Shull and Rodgers, 1995: 478), “이혼법의 영역에서 보면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였던 혼인 비혜소주의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배제함으로써 이혼을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거쳐,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기에 이른 파탄주의의 과정을 거쳐왔다”(이정향, 2003: 97).

Young, 2001).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이상적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이며, 산업화에 따른 가족 및 경제제도의 변화는 결혼 당시의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은 결혼의 안정성과 연결되어 이혼율을 감소시켜 주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1974년 이혼법의 제정으로 이혼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또한 이혼의 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이혼율이 감소되었다(Heaton, Cammack and Young, 2001). 따라서 이혼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4: 이혼법의 개정으로 이혼의 절차가 쉬워지면(어려워지면) 이혼율은 증가(감소)할 것이다.

이혼율의 차이에 대한 문화적 및 역사적 접근은 주로 성비의 차이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은 Guttentag and Secord(1983; White, 1990에서 재인용)의 성비가설(sex ratio hypothesis)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정 추구 성향이 더 강하며, 남성의 부인 외의 다른 여성에 대한 상대적 접근 가능성이 이혼율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이 높을 때 이혼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Trent and South(1989)는 66개 국가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분석에서 여성의 성비가 낮은 사회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비가설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이 설정된다.

연구가설 5: 15세 이상 인구의 남성의 성비가 높을수록 이혼율은 낮을 것이다.

3. 기타 거시적 요인들

한 사회의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구조 요인에는 그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이혼 관련 법제도, 경제발전 수준과 경기변동, 가족 및 결혼제도, 남녀간의 성비와 기혼 여성들의 연령 구조,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 사회통합 수준, 결혼 및 가족과 관련한 가치 체계, 그리고 그 사회의 주된 종교 등이 포함된다(South, 1985; Trent and South, 1989; White, 1990).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기혼 여성들의 연령 구조도 이혼율을 결정짓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Easterlin은 특정 연령에 놓여 있는 코호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제적 압박이 이혼율

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인구 규모가 적으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비교적 덜 경험하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 비해 낮은 실업률과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소규모의 코호트는 결혼 역할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기 때문에 낮은 비율의 이혼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코호트의 규모가 커 젊은층의 인구가 많게 되면 그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결혼 해체로서의 이혼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혼율이 감소되고 있는 요인으로 교육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 도시화, 혼인전 취업률의 상승, 법제도의 변화, 자유선택에 의한 결혼의 증가 등이 분석되고 있다.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가족 외의 제도의 발달을 가져왔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이 담당했던 여러 기능들을 가족이 아닌 여러 다른 제도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안정성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Cherlin and Furstenberg, 1988). 가족제도의 중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Espenshade, 1985), 산업화가 이루어진 모든 나라에서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혼율은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셈인데(White, 1990), 이는 이혼 형태가 산업화보다는 각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결혼 형태와 더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는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가치관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혼율이 낮아지고 있다(Heaton, Cammack and Young, 2001).

전반적인 사회통합의 수준이 그 사회의 이혼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합의도 쉽게 찾아진다. 이혼율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 Glenn and Shelton(1985)은 사회통합은 지역주민이 배우자 선택과 결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혼에 따른 사회적 낙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이혼율을 낮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결혼 규범의 쇠퇴, 형식적인 결혼에 대한 규범의 약화, 혼내 및 혼외 출산의 차이와 결혼과 동거의 차이에 대한 규범의 약화 등으로 이혼이 쉬워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이혼율은 증가하게 된다. 이혼율 변화의 결정 요인 중의 하나로 이전의 이혼율이 제기되기도 하는데(South, 1985),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의 가치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과 관련한 규범적 환경을 자유스럽게 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낙인을 줄여주게 되며, 이혼율 증가 자체가 추가적인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South, 1985: 33).

Ⅲ. 자료 및 변수의 측정

이혼율에 대한 거시적 접근은 여러 사회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혼율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한 사회의 이혼율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로 나뉘어 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혼율의 연도별 변화에 사회 및 경제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분석단위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각 연도가 된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통계정보 대표 홈페이지(STAT-KOREA)’와 ‘통계정보시스템(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이며³⁾,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화해 측정하였다.

이혼율: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해당 년도의 이혼율이다. 이혼율은 산출에 사용된 분모의 성격에 따라 조이혼율(CDR: Crude Divorce Rate), 일반이혼율(GDR: General Divorce Rate), 연령별 이혼율(ASDR: Age-Specific Divorce Rate), 그리고 유배우 이혼율(Divorce Rate for Married Couples)로 나눌 수 있다(통계청, 2004a: 31). 조이혼율은 이혼빈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데, 통상적으로 1년 동안에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변환한 것으로, 이혼율 또는 보통이혼율이라고도 한다. 조이혼율은 산출방법이 간편하고 단일 지표로 이용이 수월하지만 현실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고, 특히 국가간 및 지역간 이혼율을 비교하여 분석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혼 빈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지표 중에서 일반이혼율은 통상적으로 1년 동안에 발생한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1,00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일반이혼율의 산출방법은 조이혼율과 산출방식이 비슷하지만, 혼인가능연령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비율로 일반이혼율이 측정되기 때문에 조이혼율보다 설명력이 높다. 1년 동안에 발생한 연령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해당 연령별 인구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산출한 연령별 이혼율

3) STAT-KOREA는 “우리나라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모든 공식 통계를 통계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통계정보 포털사이트”를 말하며(대한민국 통계정보 대표 홈페이지, 2004), KOSIS는 우리나라 국내의 주요 통계와 국제연합 및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비교 통계정보 등을 수록한 광범위한 통계 데이터 베이스다(통계정보시스템, 2004).

은 지표 산출이 다소 복잡하며, 특정의 연령 계층에서 얼마나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그리고 유배우 이혼율은 1년 동안에 발생한 이혼 건수를 해당 연도의 유배우 인구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혼은 결혼한 인구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유배우 이혼율이 이혼빈도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정된 이혼율과 그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이혼율은 한 사회에 있어서의 이혼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지만 이혼 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기혼 여성의 연령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배우 이혼율의 측정 방법을 변형하여 1년 동안에 발생한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15세 이상 유배우 여성 인구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조정이혼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전년도의 조정이혼율에 비해 해당 연도의 조정이혼율이 변화한 정도의 백분비를 산출해 조정이혼율의 변화율로 삼았다.

설명변수: 이혼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통계청, 2004b),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경제활동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혼 여성의 경제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고려하는 미취업 기혼 여성의 결혼 해체 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취업 가능성도 반영한다.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측정 중에서 실업률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실업률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통계청, 2004b), 실업률의 산출에 적용되는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된다(통계청, 2004b). 소득수준은 미국의 화폐단위인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되는데, 경상 국내총생산을 거주자 개념의 연안인구로 나눈 후, 이를 다시 연 평균 환율로 나눈 것이다(통계청, 2004b).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이혼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부부간에 이혼이 합의된 후에도 실질적인 법적 이혼에 이르기까지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측정간에는 일정의 시차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예를 들어, South, 1985), 실증연구에서 경제상황이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분석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와 이혼율의 측정간에 시차를 두지 않고 당해연도의 측정값으로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이혼율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 여건에는 남녀 성비와 이혼과 관련한 가족법의 개정 여부를 포함시켰다. 이혼율의 차이에 대한 시기적 접근은 성비가 설에 바탕을 두기도 하는데(Trent and South, 1989; White, 1990), 이 연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남녀 성비를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인구수로 산출하였다. 이혼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및 상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족편과 상속편을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은 친족편 속에 규정되어 있다(김숙자, 2003). 우리나라 민법상의 이혼제도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며, 둘 다 파탄주의에 속한다⁴⁾. 특히 협의이혼제도에서는 당사자간에 이혼의사만 합치되면 협의이혼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혼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정향, 2003: 99). 구민법에서는 단순히 호적공무원에 의해 이혼의사의 형식적 심사만이 이루어짐으로써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일방적 강제적 축출의 폐단이 심했었다. 비록 1963년에 호적법을 개정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실질적 심사를 인정함으로써 남녀 불평등 협의이혼제도는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이혼의사의 합의에 있어 남편의 우월한 지위에 의한 부부 불평등의 이혼은 계속되었다. 축출이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1977년 가족법을 개정해 이혼의 합의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 인가를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하였다(이정향, 2003: 99). 법원에 의한 이혼의사의 확인이라는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이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개정된 이혼법이 시행된 1978년의 이혼율이 전해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 관련법은 양성평등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1990년에 다시 개정되었다(노명숙·김순옥, 2000: 95). 개정가족법⁵⁾은 재산분할 청구권, 자녀의 친권자 선임, 그리고 이혼 후 자녀면접 교섭권 등을 보장함에 따라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은 전업 주부에게도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법의 개정은 시행된 해와 그 다음해에 이

4) 그러나 협의이혼제도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파탄주의로 분류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 중에 파탄주의 규정은 있으나 판례가 유체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체주의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이정향, 2003).

5)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법을 개정가족법이라 부른다(노명숙·김순옥, 2000: 95).

혼율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각 '1'의 값을 주었고, 그리고 다른 연도에는 모두 '0'의 값을 주었다.

IV. 분석 결과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이혼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 인구 1,000명당의 이혼건수로 측정되는 조이혼율은 1970년도에 0.3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3년도의 조이혼율은 0.74건에 달해 1970년에 비해 13년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 이혼율의 증가 추세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해 지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해당 연도의 이혼율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의 변화율을 보면 1990년대에는 해마다 5퍼센트 이상의 증가율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7.2퍼센트의 이혼율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위기 후의 경제적 압박이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결혼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Kwon et al., 2003) 이혼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은 결혼한 인구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조이혼율은 이혼 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기혼 여성의 연령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배우 여성을 기준으로 한 조정이혼율을 산출하여 이혼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조정이혼율을 이용하여 1970년부터 2003년까지의 이혼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도 조이혼율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이혼 통계의 현황에서 이혼율이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8년과 1979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각각 4.2퍼센트, 그리고 14.3퍼센트의 이혼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혼율 감소는 1977년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부부간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축출이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1977년 가족법 개정에서는 이혼의 합의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인가를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하였으며(이정향, 2003: 99), 법원에 의한 이혼의사의 확인이라는 제한은 이혼의 절차를 이전에 비해 어렵게 함으로써 이혼 발생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표 2>에 정리하였다. 여러 설명변수 중에서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이 조정이혼율과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각각 $r=0.84$, $r=0.82$),

〈표 1〉 연도별 이혼 관련 통계 현황: 1970-2003

연도	이혼건수	조이혼율 ¹⁾	조이혼율 변화율 ²⁾	조정이혼율 ³⁾	조정이혼율 변화율 ⁴⁾
1970	11615	0.360	-	2.121	-
1971	11361	0.346	-4.096	2.026	-4.477
1972	12188	0.364	5.285	2.129	5.083
1973	12719	0.373	2.528	2.168	1.838
1974	14073	0.406	8.767	2.341	7.968
1975	16453	0.466	14.962	2.654	13.345
1976	17178	0.479	2.753	2.679	0.973
1977	20280	0.557	16.232	3.066	14.414
1978	19734	0.534	-4.159	2.894	-5.590
1979	17178	0.458	-14.263	2.450	-15.340
1980	23662	0.621	35.616	3.288	34.194
1981	24543	0.634	2.118	3.307	0.580
1982	26898	0.684	7.915	3.511	6.162
1983	29609	0.742	8.468	3.742	6.593
1984	36127	0.894	20.517	4.419	18.065
1985	38838	0.952	6.451	4.606	4.246
1986	39744	0.964	1.320	4.590	-0.359
1987	42375	1.018	5.575	4.766	3.847
1988	42116	1.002	-1.580	4.620	-3.066
1989	43283	1.020	1.759	4.637	0.362
1990	45694	1.066	4.535	4.775	2.978
1991	49205	1.136	6.623	5.051	5.778
1992	53539	1.224	7.683	5.404	6.992
1993	59313	1.342	9.665	5.890	9.002
1994	65015	1.456	8.516	6.351	7.882
1995	68279	1.514	3.969	6.555	3.204
1996	79895	1.755	15.903	7.566	15.436
1997	91159	1.984	13.034	8.518	12.571
1998	116818	2.522	27.127	10.787	26.642
1999	118014	2.532	0.386	10.805	0.173
2000	119982	2.552	0.821	10.893	0.812
2001	135014	2.852	11.733	12.173	11.748
2002	145324	3.050	6.966	13.019	6.950
2003	167096	3.487	14.296	14.832	13.928

주: 1) 조이혼율 = (이혼건수/연앙인구)×1,000

2) 조이혼율 변화율_t = ((조이혼율_t-조이혼율_{t-1})/조이혼율_{t-1})×100

3) 조정이혼율 = (이혼건수/15세 이상 유배우 여성)×1,000

4) 조정이혼율 변화율_t = ((조정이혼율_t-조정이혼율_{t-1})/조정이혼율_{t-1})×100

전년도의 이혼율과 비교한 이혼율 변화율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이혼율과의 단순상관관계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이론적 모형에 포함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상관관계의 값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 2〉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단순 상관관계 계수: 1971-2002

	조정 이혼율	조정이혼율 변화율	국민소득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성비
조정이혼율	1.000					
조정이혼율 변화율	0.232	1.000				
국민소득	0.835**	0.150	1.000			
여성경제활동참여율	0.820**	0.094	0.952**	1.000		
실업률	0.075	0.261	-0.353*	-0.358*	1.000	
성비	0.098	-0.039	0.131	0.145	-0.125	1.000

주: * p<0.05, ** p<0.01, *** p<0.001

경제상황이 이혼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회귀 분석 모형은

$$\text{조정이혼율} = f(\text{소득수준}, \text{실업률}, \text{여성경제활동참가율}, \text{성비}, \text{가족법개정1977}, \text{가족법개정1990})$$

으로 설정되는데, 각 변수는

- 조정이혼율: 15세 이상 유배우 부인 1,000명당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혼건수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경제활동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생활수준: 미국 달러화로 측정된 1인당 국내총생산

으로 정의된다. 회귀분석의 과정에서 설명변수를 단계별로 모형에 포함시켰는데, 모형1에서는 경제상황과 관련된 소득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그리고 실업률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모형2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성비만을, 모형3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두 차례의 가족법 개정을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모형4에서는 모든 설명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이혼율이 보이는 전

체 변이의 86.5퍼센트를 경제상황-소득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실업률이 설명하고 있다(모형1). 경제상황 이외의 설명변수인 15세 이상 인구의 성비, 1977년과 1990년의 가족법 개정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켜도 이혼율 변이에 대한 설명력은 0.7퍼센트 포인트만 증가할 뿐이다(모형4).

〈표 3〉 조정이혼율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회귀 계수: 1970-200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17.935 (9.248)		-54.658 (111.724)		5.567 (0.598)		-28.784 (45.150)	
소득수준	5.258E-4 (0.000)	0.630**					4.814E-4 (0.000)	0.57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0.369 (0.222)	0.375					0.419 (0.240)	0.426
실업률	1.192 (0.205)	0.431***					1.131 (0.220)	0.409***
성비			0.608 (1.132)	0.098			0.092 (0.452)	0.015
법개정-1977 ¹⁾					-2.895 (2.316)	-0.227	-0.487 (0.984)	-0.038
법개정-1990 ²⁾					-0.340 (2.316)	-0.027	-0.992 (0.963)	-0.078
adjusted R ²	0.865		0.010		0.051		0.872	

주: 1) 1: 1978년 및 1979년; 0: 그 외의 년도

2) 1: 1991년 및 1992년; 0: 그 외의 년도

* p<0.05, ** p<0.01, *** p<0.001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른 조건이 같다고 전제할 경우 실업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1인당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의 회귀분석 모형1에서 소득수준은 0.01수준에서, 그리고 실업률은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이혼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순상관관계를 보이던 국민소득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중에서 소득수준만이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단순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r=0.952$), 두 변수가 함께 회귀분석의 모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혼율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민소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혼율과의 단순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던 실업률($r=0.075$)이 회귀분석에서 다른 설명변수를 모두 통제하게 되

면 이혼율의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시계열분석에서 경제상황과 이혼율의 일반적 단순 증가 추이가 인과관계의 형태로 분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ext{조정이혼율 변화율} = f(\text{소득수준 변화율, 실업률 변화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율, 성비 변화율, 가족법개정1977, 가족법개정1990})$$

의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변화율은 전년도의 값을 기준으로 변화된 크기의 비율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산출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조정이혼율 변화율}_t &= ((\text{조정이혼율}_t - \text{조정이혼율}_{t-1}) / \text{조정이혼율}_{t-1}) \times 100 \\ \text{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율}_t &= ((\text{여성참가율}_t - \text{여성참가율}_{t-1}) / \text{여성참가율}_{t-1}) \\ &\quad \times 100 \\ \text{실업률 변화율}_t &= ((\text{실업률}_t - \text{실업률}_{t-1}) / \text{실업률}_{t-1}) \times 100 \\ \text{소득수준 변화율}_t &= ((\text{소득수준}_t - \text{소득수준}_{t-1}) / \text{소득수준}_{t-1}) \times 100 \\ \text{성비 변화율}_t &= ((\text{성비}_t - \text{성비}_{t-1}) / \text{성비}_{t-1}) \times 100 \end{aligned}$$

변화율이 전년도의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69년을 기준으로 한 1970년도의 변화율을 산출하는 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화율과 관련한 분석은 1971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혼율 자체의 증가와는 달리 경제상황 변화의 정도가 이혼율의 변화율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의 회귀모형4에서는 경제상황의 변화율과 성비의 변화율, 그리고 두 차례의 가족법 개정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이혼율 변화율의 전체 변이의 59.8퍼센트가 회귀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설명변수 중에서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뿐이며,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 축출이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1977년의 가족법 개정에 따라 부부간의 이혼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의 까다로운 일정 기간 동안의 이혼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표-4〉 조정이혼율 변화율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회귀 계수: 1971-2002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10.321 (2.129)		6.263 (1.658)		7.397 (1.604)		9.771 (1.983)	
소득수준 변화율	-0.254 (0.124)	-0.404*					-0.138 (0.120)	-0.220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변화율	-1.020 (0.571)	-0.290					-0.985 (0.519)	-0.280
실업률 변화율	2.805E-2 (0.055)	0.101					6.982E-2 (0.052)	0.249
성비 변화율			-6.127 (8.196)	-0.135			6.980 (6.393)	0.154
법개정-1977 ¹⁾					-17.862 (6.214)	-0.472**	-16.931 (5.609)	-0.447**
법개정-1990 ²⁾					-1.012 (6.214)	-0.027	-1.638 (4.828)	-0.043
adjusted R ²	0.450		0.018		0.222		0.598	

주: 1) 1: 1978년 및 1979년; 0: 그 외의 년도

2) 1: 1991년 및 1992년; 0: 그 외의 년도

* p<0.05, ** p<0.01, *** p<0.001

V. 논의 및 결론

사회현상으로서의 이혼은 미시적으로는 가족해체를 나타내고, 거시적으로는 결혼제도 자체의 사회적 부적정성 및 결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혼의 결과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eyman and Slep, 2001), 그 자녀들에게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준다(Reifman et al., 2001). 특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동거가 점차 늘어나면서 혼외 출산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혼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 등은 결혼제도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Amato et al., 2003: 1).

이혼의 발생 가능성을 미시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율의 증가에 대한 거시구조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White, 1990: 904), 이혼율

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에는 관련 법, 사회경제적 상황, 문화가치체계, 인구구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혼율을 결정짓는 거시구조 요인 중의 하나로 경제상황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South, 1985; Trent and South, 1989; White, 1990),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반해 불경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이혼에 대한 거시구조적 접근은 같은 시기의 여러 사회들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경우와 한 사회의 이혼율 변화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대한 거시적 접근의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가설에서는 남성의 경제적 상황과 이혼 가능성은 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며(White and Rogers, 2000),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남성 가구주의 실직은 부부간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이는 혼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혼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Kwon et al., 2003)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혼율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혼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이혼율의 일반적 단순 증가 추이가 시계열분석에서 인과관계의 형태로 분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동태사회지표 모형의 경우 주어진 시계열의 범위 안에서 보이는 지속적인 추이와 지속적인 추이 안에서의 변화 양상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South, 1985). 소득수준과 이혼율과 같이 매우 강한 형태로 지속적인 변화의 추이를 보이게 되면 전체적인 추이 안에서 나타나는 연도별의 변화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혼율 자체의 증가와는 달리 경제상황 변화의 정도가 이혼율의 변화율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 중에서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에는 이혼 관련 법제도, 경제발전 수준과 경기변동, 가족 및 결혼제도의 특성, 남녀간의 성비와 기혼 여성들의 연령 구조,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 사회통합의 수준, 결혼 및 가족과 관련한 가치 체계, 그리고 그 사회의 주된 종교 등이 포함된다(South, 1985; Trent and South, 1989; White, 1990).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진다.

참고문헌

- 곽배희 (2001), “한국 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미발간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숙자 (2003), “한·중 이혼법의 비교연구 및 한국의 이혼현상,” 《사회과학논총》 20: 21-36, 명지대학교.
- 김정옥·박경규 (1993), “이혼의 사회적 배경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1(4): 83-94.
- 노명숙·김순옥 (2000), “1990년 개정가족법 이후의 판례에 나타난 이혼효과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93-112.
- 대한민국 통계정보 대표 홈페이지 (2004), “STAT-KOREA 란?”
[<http://www.stat.go.kr/statcms/guide>]
- 두리모아 (2003), “유채주의란,” 법률상식.
[<http://www.durimoa.co.kr/cook/low.htm>]
- 변화순 (1987), “한국의 이혼율 변동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찰,” 《한

- 국인구학회지》10(2): 1-16.
- 신순자 (1996), “새가족법에 따른 이혼판례에 대한 고찰: 1991년 5월~1995년 11월,” 《대한가정학회지》34(2): 355-365.
- 이무영·이소희 (2003),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8(2): 39-61.
- 이정향 (2003), “현행 이혼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사회과학논총》2: 97-116,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태영 (1987), 《한국의 이혼을 연구 I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현송 (1997), “이혼의 인구·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2: 69-90.
- 통계정보시스템 (2004), “KOSIS 개요”
[<http://www.nso.go.kr/kosisdb/KOSIS.htm>]
- 통계청 (2003),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도자료. 2003. 7. 11.
[http://www.nso.go.kr/newcms/upload_file/upload2/svwp2003.PDF]
- _____ (2004a),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4. 3. 31.
[http://www.nso.go.kr/newcms/upload_file/upload2/svpo2003.PDF]
- _____ (2004b), “통계 관련 용어”
[http://www.nso.go.kr/newcms/help/word/search_d.html]
- 한경혜·강유진·한민아 (2003),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15(1): 77-96.
- 한성현·최민자·이진석 (2000), “우리나라 여성 이혼율의 최근 변화추세 - 인구동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통계학회지》25(1): 1-10.
- Amato, Paul R., David R. Johnson, Alan Booth, and Stacy Rogers (2003), “Continuity and Change in Marital Quality between 1980 and 200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February): 1-22.
- Barber, Nigel (2003), “Divorce and Reduced Economic and Emotional Interdependence: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9(3/4): 113-124.
- Cherlin, Andrew (1992), *Marriage, Divorce, Remarriage*, 2n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rlin, Andrew J. and Frank Furstenberg (1988), “The Changing European

-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9: 291-297.
- Espenshade, Thomas (1985), “Marriage Trends in America: Estimates, Implications, and Underlying Caus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 193-245.
- Fine, Mark A. and David R. Fine (1994), “An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Recent Changes in Divorce Laws in Five Western Countries: The Critical Role of Val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May): 249-263.
- Glenn, Norval D. and Beth Ann Shelton (1985), “Regional Differences in Divorc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August): 641-652.
- Glick, Paul, and Sung-ling Lin (1986), “Recent Changes in Divorce and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November): 737-747.
- Gottman, John Mordechai and Robert Wayne Levenson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August): 737-745.
- Heaton, Tim B., Mark Cammack, and Larry Young (2001), “Why is the Divorce Rate Declining in Indonesi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May): 480-490.
- Heyman, Richard E. and Amy M. Smith Slep (2001), “The Hazards of Predicting Divorce Without Crossvalid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May): 473-479.
- Hiedemann, Bridget, Olga Suhomlinova and Angel M. O’Rand (1998),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Status, and Empty Nest in Midlife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February): 219-231.
- Hou, Feng and Lewis Odhiambo Omwanda (1997),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Connection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Divorce in Canada, 1931-1991,” *IJCS* 38(3-4): 271-288.
- Jones, Gavin W. (1997), “Modernization and Divorce in Islamic Southeast Asia and the Wes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1):

95-114.

- Kwon, Hee-Kyung, Martha A. Rueter, Mi-Sook Lee, Seonju Koh, and Sun Wha Ok (2003), "Marital Relationships Follow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Applying the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May): 316-325.
- Land, Kenneth. C. and Marcus Felson (1976), "A General Framework for Building Dynamic Macro Social Indicator Models Including an Analysis of Changes in Crime Rates and Police Expendit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November): 565-604.
- Nakonezny, Paul A., Robert D. Shull, and Joseph Lee Rodgers (1995), "The Effect of No-Fault Law on the Divorce Rate across the 50 States and its Relation to Income, Education, and Religios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May): 477-488.
- Oppenheimer, Valerie Kincade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431-453.
- Rangarao, A. V. S. V. and K. Sekhar (2002), "Divorce: Process and Correlates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4): 541-563.
- Reifman, Alan, Laura C. Villa, Julie A. Amans, Vasuki Rethinam, and Tiffany Y. Telesca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 Meta-Analysi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6(1/2): 27-36.
- Rogers, Stacy J. (1999), "Wives' Income and Marital Quality: Are There Reciprocal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February): 123-132.
- Rogers, Stacy J. and Paul R. Amato (1997), "Is Marital Quality Declining? The Evidence from Two Generations," *Social Forces* 75(3): 1089-1100.
- Rogers, Stacy J. and Danelle D. DeBoer (2001), "Changes in Wives' Income: Effects on Marital Happin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May): 458-472.
- Schoen, Robert and William L. Urton (1979),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Cohort Marriage and Divorce in Twentieth Century Sweden," *Journal*

-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May): 409-416.
- South, Scott J. (1985),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ivorce Rate: A Time-series Analysis of the Postwar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February): 31-41.
- Trent, Katherine, and Scott J. South (1989), "Structural Determinants of the Divorce Rate: A Cross-socie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May): 391-404.
- White, Lynn K. (1990), "Determinants of Divorce: A Review of Research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November): 904-912.
- White, Lynn K. and Stacy J. Rogers (2000), "Economic Circumstances and Family Outcomes: a Review of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November): 1035-1051.